

# 「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9월 5일, 김광성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광성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평창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옥외행사에 대한 조례안 적용범위(안 제3조)
- 2)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수립·시행 준수 책무(안 제4조)
- 3)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(안 제5조)
- 4) 행사장소 안전점검 실시(안 제6조)
- 5) 주최자 등에게 협조 요청 및 경찰서장 등 지원요청(안 제7~8조)
- 6) 안전관리요원 배치(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각종 사고 및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안전관리계획 신고 및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고,

안전관리 대상에 주최·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를 포함시켰으며,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함.

○ 현행 안전 관련 법령<sup>1)</sup>에 따르면

‘1,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주최·주관자가 있는 공연·행사’에 한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어, 이를 조례로는 ‘500명 이상 1,0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’ 등으로 확대하고, 안전점검의 대상으로, ‘주최·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’를 포함시켜 입법의 미비로 인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함.

○ 검토결과,

상위법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공연법」 이하 법령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